

에콰도르 헌법상 자연의 권리, 그 이상과 현실*

박 태 현**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에콰도르 헌법 체계에서 자연의 권리 소송과 평가
- III. 자연의 권리 모델과 오슬로 선언
- IV. 나가며

【국문초록】

1972년 스톤(Christopher Stone) 교수는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자연물(natural objects)에도 법적권리를 인정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연물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자연물에 사실상 권리주체성을 인정한 법정은 없었다. 2008년 9월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 조항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헌법 제71조는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

2011년 에콰도르 법원은 처음으로 자연의 권리 조항을 인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하천에 버린 지방정부를 상대로 강과 주변 생태계의 원상회복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자연의 권리 조항이 언제나 헌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해석,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콘도르-미라도르(Condor-Mirador) 노천 채광개발 사건에서 법원은 채광개발사업은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익에 해당하는 광산 개발이익이 사적 목적에 해당하는 시민사회의 자연보호 노력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에서

*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 520170272).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 훼손은 자연의 권리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자연의 권리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중 원고가 승소한 것도 패소한 것도 있다. 이러한 소송결과는 겉으로는 자연의 권리 조항의 해석, 적용을 둘러싼 다툼의 결론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해석, 적용에는 에콰도르의 정치경제적 개발구조와 기득이익집단의 세력, 사법부의 독립성, 법률가들의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적 소양 등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자연의 권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자연의 권리가 실제 현실에서 정상성(normalcy)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의 권리가 지금은 약하지만 자연적 실체를 사람과 같은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자연의 권리는 단순한 림-서비스에서 비중을 갖는 그 무엇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연적 실체의 법적 보호를 지지하는 정치적 의지의 향방이다.

I. 들어가며

1972년 스톤(Christopher Stone) 교수는 시대의 획을 긋는 논문인,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¹⁾를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현행 법 구조 아래에서 어떻게 자연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는지를 서술하며, 자연물(natural objects)에도 법적권리를 인정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²⁾ 그러나,

1) Christopher Stone, Should Trees Have Standing-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45 S. Cal. L. Rev. 450 (1972). 크리스토프 스톤(허범 옮김), 법정에 선 나무들, 아르케, 2003 제1장의 내용은 이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2) J.R. 데자르댕(김명식 옮김), 환경윤리, 자작나무, 1999, 183-186에서 스톤의 자연물의 권리론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스톤은 “권리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이익을 다룰 수 있는 권위 있는 공공기구에 의해 승인될 때 비로소 존재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제로 어떤 것이 그 자체의 존엄성과 가치에 기초하여 자신의 법적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첫째 스스로 법적 행위(소송)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법적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 그것에 대한 손실을 법원이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법적 구제를 통해 그것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톤은 자연물도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먼저 자연물은 어떻게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스톤 교수는 자연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후견인(guardian)이나 보호자(conservator), 또는 피신탁자(trustee)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은 자연물의 손실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 스톤 교수는 자연물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지며 또 그 이익의 침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스모그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소나무의 후견인이자 소송대리인은 피후견인인 소나무가 스모그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구제를 통해 자연물의 이익이 증진될 수

실제 자연물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자연물에 사실상 권리주체성을 인정한 법정은 없었다.³⁾

그럼에도 자연에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1989년 환경윤리학자 내쉬(Roderick Nash) 교수는 《자연의 권리》⁴⁾에서 역사를 통해 권리 없는 존재(the right-less)-노예, 여성 그 밖의 존재-가 법적 권리체계 안에 자신들을 인정받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해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2001년 토마스 베리는 <권리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역할(The Origin, Differentiation and Role of Rights)>에서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이 어떻게 또 어떠한 내재적 권리를 갖는지를 우주론·생명진화론의 과학적 시각에서 기술하였다.⁵⁾ 200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법률실무가 컬리닌(Cormac

있을까? 스톤 교수는 자연물의 손해를 배상하는 법적 치유책이 유의미하다며 우리는 환경을 온전한(whole) 상태로 만드는 것을 법적 표준과 목표로 삼을 수 있으므로 책임당사자에게 자연물이 건강을 회복하는데(즉 침해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3) 미국에서 멸종위기종 내지 보호종을 원고로 내세운 이른바 ‘자연의 권리’소송이 다수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하와이 새 빠리야 사건(palilla, 1979), 점박이올빼미 사건(Northern Spotted Owl, 1988), 그램산 붉은 다람쥐 사건(Mt. Graham Red Squirrel, 1991), 하와이 까마귀 사건(Hawaiian Crow Alala, 1991), 돌고래 카마 사건(Kama, 1993), 플로리다 사슴 사건(Key Deer, 1994), 바다오리 사건(Marbled Murrelet, 1996) 등을 들 수 있다(간략한 소개는 한삼인·강홍균, 자연의 권리 소송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4집, 2006, 463-5면 참고; 하와이 까마귀 사건과 돌고래 카마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었다. 두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연물 원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나머지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넘어갔기에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같은 글, 465면). 독일에서는 1988년 북해 바다표범들이 떼죽음을 당하자 바다표범의 이름으로 서식지에 독성중금속 유입 방지를 구하는 이른바 북해바다표범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한삼인·강홍균, 앞의 글, 467면; 법원은 법적 주체성은 인간에게만 인정될 수 있다면 소를 각하하였다). 일본에서도 동물을 원고로 내세운 소송이 수건 제기되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95년 아마미쿠로우사기 즉 야생토끼를 원고로 하여 산림법에 근거한 개발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이다(한삼인·강홍균, 앞의 글, 466-7면). 한국법원에서도 2003년 도롱뇽이 당사자가 되어 서식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속철도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각하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 1148,1149 결정).

- 4) Roderick F. Nash, *The Rights of Nature: A History of Environmental Ethics* (4th. ed.),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9.

- 5) 토마스 베리는 지구 공동체의 모든 성원은 존재할 권리, 거주할 권리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공진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라는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코막 컬리닌(박태현 옮김), *야생의 법: 지구법 선언*, 로도스, 2016, 177-8면 참고). 베리는 이러한

Cullinan)은 《야생의 법》⁶⁾에서 토마스 베리와 함께 스톤과 내쉬가 촉발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적·역사적 논의에 중요한 영적, 도덕적 요소를 추가하면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08년 9월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 조항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⁷⁾ 2011년에는 에콰도르에서 헌법 조항에 따른 최초의 자연의 권리 소송에서 생태계의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이 있었다.

한편, 2011년 유엔 지속 가능 발전 컨퍼런스(Rio+20) 결과물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제39절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필요와 미래세대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Harmony with Nature)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⁸⁾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자연의 권리를 “모든 차원에서의 계획,

자연의 권리를 인간의 법체계 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이라는 법철학을 주창하였다. 베리는 2001년 한 컨퍼런스에서 “지구는 새로운 법학을 필요로 한다(Earth needs new jurisprudence)”고 주장하며 지구법학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켈리넨은 베리의 이 아이디어를 야생의 법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켈리넨에 따르면 지구법학의 구체적 적용은 각 사회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요소를 공유한다고 한다. 1. 지구법학은 그것을 형성하고 또 그것의 기능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맥락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2. 지구 공동체의 모든 성원의 근본적 권리(Earth rights)의 원천은 우주이고,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인간들이 만든, 인간을 위한 법학(인간법학)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한되거나 폐기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3. 지구법학은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 간의 역동적 평형의 유지와 상호성(reciprocity)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인간 행위가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지 혹은 약화하는지에 따라 인간 행위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접근방식을 취한다. 4. 지구 공동체의 비(非)인간적 성원의 역할과 권리를 인정하고 그 역할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인간(행위)를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진다(코막 켈리넨, 2022년). 한편, 2016년 지구법학을 다루는 첫 번째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전문가 요약보고서(A/71/266)가 발표되었다.

- 6) Cormac Cullinan, *Wild Law: A Manifesto for Earth Justice*, Green Books, 2003. 한국어 번역은 코막 켈리넨(박태현 옮김). 야생의 법: 지구법 선언, 로도스, 2016.
- 7) 멕시코 Guerrero 주(州)는 2014년 헌법을 개정하여 “자연의 권리의 보장과 보호”를 규정하였다. 동 헌법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 존중은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사회정의와 더불어 헌법의 근본가치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2017년 멕시코시티는 “권리주체인 집합적 실체로서 생태계와 종들로 구성되는 자연의 권리의 광범한 보호”를 인정하고 규율하는 그러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의 입법을 명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켰다.
- 8) U.N. A/RES/66/288. “We recognize that planet Earth and its ecosystems are our home and that ‘Mother Earth’ is a common expression in a number of countries and regions, and we note that some countries recognize the rights of nature in the context of the

조치 및 평가에서 그리고 연맹의 계획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행하는 결정에서 하는 모든 평가에서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핵심 요소”로 삼겠다는 결정을 하였다.⁹⁾

법원에서도 자연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다. 2016년 콜롬비아의 헌법재판소는 아트라토(Atrato) 강은 “보호, 보전, 유지 및 복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다며, 원주민과 정부로 구성되는 강을 위한 공동 보호기구(joint guardianship)를 설치할 것을 명하였다.¹⁰⁾ 2017년 인도 우타르칸트(Uttarakhand) 고등법원은 강가와 야무나(the Ganga and Yamuna) 강과 빙하 및 그 밖의 생태계를 특정한 권리를 갖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¹¹⁾ 2017년 미국에서 특정 생태계가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정을 구하는 최초의 소송인 콜로라도 강 소송(Colorado River vs. State of Colorado)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되었다.¹²⁾¹³⁾

법률로서 자연에 법인격의 지위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입법사례도 있었다. 뉴질랜드 의회는 2014. 7. 테 우레웨라 법(Te Urewera Act 2014)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국립공원인 테 우레웨라 삼림지역은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권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 “법적 실체(legal entity)”가 되었다. 이어 2017. 3. 테 아와 투푸아 법(Te Awa Tupua Act 2017;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 2017)을 제정한다. 이 법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긴 황거누이 강은 법인격(legal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We are convinced that in order to achieve a just balance among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need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t is necessary to promote **harmony with nature.**”

- 9) IUCN, Incorporation of the Rights of Nature as the Organizational Focal Point in IUCN’s Decision-making, World Conservation Congress, Res. 100-EN-2012.
- 10) Rio Atrato Case, Decision T-622/2016 (Columbia Const. Ct. 2016).
- 11) Lalit Miglani v State of Uttarakhand Writ Petition (PIL) No. 140 of 2015, (High Court of Uttarakhand). 이에 대해서는 Erin L. O’Donnell, At the Intersection of the Sacred and the Legal: Rights for Nature in Uttarakhand, Ind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30, 2018, pp. 135-6.
- 12)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하였다. Order, Colorado River Ecosystem v. Colorado, No. 17-cv-02316-NYW (D. Colo. Dec. 4, 2017). 이 판결에 대한 학술적 비평으로는 Matthew Miller, Environmental Personhood and Standing For Nature: Examining the Colorado River Case, 17 U. N.H. L. Rev. 355 (2019).
- 13) 근래 미국에서 자연의 권리의 등장과 발전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 David R. Boyd, Recognizing the Rights of Nature: Lofty Rhetoric or Legal Revolution?, 32-SPG Nat. Resources & Env’t 13 (2018), at 13-5.

personality)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¹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의 권리는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한 의제로 계속 다루어져 왔다.¹⁵⁾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전에 명시한 에콰도르 헌법은 이후 국제적 논의와 판결과 입법 등 실천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이 글은 이러한 2008년 에콰도르 헌법전의 자연의 권리 조항을 알아보고, 실제 환경소송에서 자연의 권리 조항이 어떻게 기능하였는지를 검토한다(Ⅱ). 이를 통하여 자연의 권리의 이상과 현실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자연에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기저에 깔린 문제의식을 간략히 살펴본다(Ⅲ).

Ⅱ. 에콰도르 헌법 체계에서 자연의 권리 소송과 평가

자연의 주체성을 전제로 “권리 부여”를 통하여 그 당사자성 내지 주체성을 법체계 내로 받아들여자는 제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며 다음과 같은 하위질문들이 잇따라 제기될 것이다. 자연에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실제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자연에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일까? 자연의 권리를 인정된다면 그것이 침해되거나 침해가 우려될 경우 누구에 의해 어떻게 권리가 방어되고 또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에콰도르 헌법 조항과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일어난 소송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구체적인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14) 이에 대해서는 Erin L. O'Donnell and Julia Talbot-Jones, Creating legal rights for rivers: lessons from Australia, New Zealand, and India, *Ecology and Society* 23(1): 7, 2018 참고. 연합뉴스 2017. 3. 16.자 기사, “뉴질랜드, 강에 세계 첫 ‘인간 지위’…원주민, 보존싸움 승리”. 황거누이 강 주변의 마오리족 공동체는 1873년 이래 이 강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받고자 정부를 상대로 싸워왔다. 황거누이 강은 “불가분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북섬 중앙의 산들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적·정신적 요소들을 포용하고 있다고 마오리족은 믿고 있다.

15) Oliver A. Houck, *Noah's Second Voyage: The Rights of Nature as Law*, 31 *Tul. Envtl. L.J.* 1 (2017), at 3-8 및 이 글 부록 참고.

1. 에콰도르 헌법에서 자연의 권리 조항

(1) 2008년 에콰도르 헌법 개정 경위

에콰도르는 10년간 극도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난 뒤 2006년 코레아(Rafael Correa)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좌파 지식인과 원주민 그 밖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연대한, Alianza PAIS라 불리는 정치적 운동의 지지에 힘입어 권력을 거머쥔 그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대체할 대안적 발전 방안을 내놓아야 하였다. 코레아는 이를 위한 핵심 조치로 우선 헌법을 다시 쓰고자 하였다. 헌법 제정에 버금가는 수준의 개정 작업은 상당히 참여적인 과정이었다. 제헌의회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3,000건 이상의 제안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참여적 과정은 자연의 권리 운동가들에게도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자연의 권리 지지자들(주로는 원주민과 환경운동가 및 환경법률가)은 환경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단체인 환경보호기금(CELDF; The Community Environmental Legal Defense Fund)과 협력하여 자연의 권리 조항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전 에너지장관인 제헌의회 의장 아코스타(Alberto Acosta) 또한 이 아이디어에 공감하며, 헌법의회 내에서 보편적 지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최종 헌법개정안에 자연의 권리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마침내 2008년 에콰도르 국민은 이를 승인한 것이다.¹⁶⁾ 이로써 2008년 9월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헌법전(典)에 자연의 권리조항을 둔 나라가 되었다.

(2) 자연의 권리 조항과 찬반론

에콰도르 헌법은 국가와 시민들에게 “자연과 조화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안녕(well-being)을 추구할 것을 명하고 있다. 헌법 전문(前文)에서 “자연의 다양성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양식의 공존질

¹⁶⁾ Graig M. Kauffman and Pamela L. Martin, Testing Ecuador's Rights of Nature: Why Some Lawsuits Succeed and Others Fail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anal Studies Association(Atlanta, Georgia, 18 March 2016), pp. 3-4.(Craig M. Kauffman and Pamela L. Martin은 2017년 이를 더 발전시켜 다음 글을 발표하게 된다. Can Rights of Nature Make Development More Sustainable? Why Some Ecuadorian Lawsuits Succeed and Others Fail, 92 World Development 130 (2017)).

서”를 정립함으로써 ‘Buen Vivir’¹⁷⁾, 곧 좋은 삶의 방식(the good way of living)을 성취하고자 하는 에콰도르 국민의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는 독립된 장(헌법 제7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71조: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 안데스 원주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인 영적 존재로 <어머니 대지>로 번역된다-필자 주)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들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¹⁸⁾
- 제72조: 자연환경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된 자연에 의지해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보상의무와는 별도로 자연 자체도 원상회복될 권리를 갖는다.¹⁹⁾

17) 원주민 언어로는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라 한다. 수막 카우사이는 원주민의 세계관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동체적 체계로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생의 가치를 중시한다. 이러한 원주민 철학은 사람과 동식물 그리고 무생물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가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우주적 윤리’의 관점에서 있다는 점에서 근대성이 갖는 ‘인본주의’의 틀을 넘어서는 철학이다(구경모 외, 2016) 상세히는 조영현·김달관,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연구 31권2호, 2012; 한편 수막 카우사이가 서구의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위 조영현·김달관의 151-5쪽 참조 및 김은중, 발전 담론과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중남미연구 32권2호, 2013, 99-105 참조.

18)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71. Nature, or Pacha Mama, where life is reproduced and occurs, has the right to integral respect for its existence and for th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of its life cycles, structure, functions and evolutionary processes.
All persons, communities, peoples and nations can call upon public authorities to enforce the rights of nature. To enforce and interpret these rights,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shall be observed, as appropriate.

The State shall give incentives to natural persons and legal entities and to communities to protect nature and to promote respect for all the elements comprising an ecosystem.

19)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72. Nature has the right to be restored. This restoration shall be apart from the obligation of the State and natural persons or legal entities to compensat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at depend on affected natural systems.

In those cases of severe or permanent environmental impact, including those caused by the exploitation of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the State shall establish the most

- 제73조: 국가는 종의 절멸이나 생태계 훼손 또는 자연 순환의 영구적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²⁰⁾
- 제74조: 개인과 공동체, 인민과 민족은 환경으로부터 혜택과 좋은 삶의 방식의 향유를 가능케 하는 자연의 부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²¹⁾

이러한 에콰도르 헌법에 따르면 자연은 크게 두 가지의 권리를 갖는다. 하나는, “존재 자체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권리”이고, 나머지 하나는 “회복될 권리”이다.²²⁾ 이러한 자연의 권리 인정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008년 제헌의회에서 자연권을 둘러싼 논쟁은 뜨거웠다.²³⁾ 인격과 이성이 없는 자연에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따르면 인간만이 권리나 가치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주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에 이롭고 옳기 때문이라며,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확대하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연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인간이 상정하는 유용성과 가치에 종속되지 않는

effective mechanisms to achieve the restoration and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eliminate or mitigate harmful environmental consequences.

- 20)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73. The State shall apply preventive and restrictive measures on activities that might lead to the extinction of species, the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the permanent alteration of natural cycles.
The introduction of organisms and organic and inorganic material that might definitively alter the nation's genetic assets is forbidden.
- 21)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74. Persons, communities, peoples, and nations shall have the right to benefit from the environment and the natural wealth enabling them to enjoy the good way of living.
Environmental services shall not be subject to appropriation; their production, delivery, use and development shall be regulated by the State.
- 22) 우리가 에콰도르 헌법에서 각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자연의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자연의 보호, 자연의 권리 인정, 그리고 자연과 조화하는 삶을 인간의 좋은 삶의 방식으로 규정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자연과 조화하는 삶이 당위명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좋은 삶의 방식이라는,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생태위기 시대에 이르러 더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된, 인생관 내지 세계관을 에콰도르 헌법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홍성태·최현·박태현, 공동자원론, 생태헌법을 제안한다, 진인진, 2016 참고)
- 23) 논쟁은 조영현·김달관,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연구 31권 2호, 2012, 143-4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자연의 본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여기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를 연역해내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 가치를 가진다면, 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그러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인간중심적 관점이 아닌 생명·생태중심의 관점에서 사유한다. 그리고 수막 카우사이를 말하는 학자들은 인간중심적 권리인 인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권(혹은 생태권)도 존재하며, 이제는 그것이 요청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입장이다.²⁴⁾

2. 자연의 권리 소송 사례²⁵⁾

(1) 빌카밤바 강(Vilcabamba River) 사건²⁶⁾

자연의 권리 조항을 인용한 원고가 승소한 최초의 사례다.²⁷⁾ 로야(Loja) 지방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하천에 버렸다. 이 투기행위로 인하여 하천 유량이 증가하고, 또 하천 유수의 흐름이 바뀌면서 장마 때 홍수가 발생해 지역 생태계 및 원고의 재산을 침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강과 주변 생태계를 원상회복하라며 강의 이익을 위한 소(보호조치 청구)를 제기하였다.

2010년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보호조치 청구를 기각하였다.

24)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인구 비율은 자료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에콰도르 총인구에서 15~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구센서스가 아닌 원주민 정체성 연구에 의하면, 에콰도르 총인구에서 원주민이라고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원주민 조건에 맞는 원주민 인구는 80~85만 명 정도이다. 따라서 정체성에 따른 원주민 비율은 총인구 1480만 명(2010년)을 기준으로 약 17%이다(김달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등장배경과 변천과정: 국민국가형성부터 현재까지,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21권 2호, 2010, 27면).

25) 소송사례들은 판결문 등 관련 자료가 에스파냐어(스페인어)여서 자료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불가피하게 Graig M. Kauffman and Pamela L. Martin의 글(각주 16)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6) R.F. Wheeler and E.G. Huddle v. Attorney Gen. of the State of Loja, (2011) Judgment No. 11121-2011-0010 (Loja Provincial Court of Justice Mar. 30, 2011). 상제는 Erin Daly, The Ecuadorian Exemplar: The First Ever Vindications of Constitutional Rights of Nature, 21 Rev. European Community and Int'l Envtl. L. 63-66 (2012) 참고.

27) Natalia Greene, The First Successful Case of the Rights of Nature Implementation in Ecuador,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 (Oct. 9, 2016), <http://therightsofnature.org/first-roncase-ecuador/>.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헌법에 자연의 권리 조항이 있으므로 원고는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제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의 손상이 아니라 자연의 손상을 증명하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환경부가 특정하는 조치를 통해 생태계를 회복할 것을 명하며 강의 이익을 위한 원고의 보호조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부정할 수 없는 자연의 기본적, 핵심적 중요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또 명백한 훼손 과정을 고려한다면, 환경피해를 즉각적으로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헌법상 보호조치 청구(the Constitutional injunction)는 적합하고 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 사전주의 원칙(the 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수행되는 개발사업이 환경오염이나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오염의 예방 또는 구제의 청원에 필요한 것을 행함으로써 자연의 권리의 즉각적 보호와 법적 보호 감독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판사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 피해를 확실히 일으킬 행위는 물론 피해를 일으킨 개인성 있는 행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자연의 피해는 그 영향이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미친다는 의미에서 세대에 걸친 피해(generational damages)라고 하며, 증명책임 전환의 원칙을 채용해 원고가 피해의 현존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고, 도로확장을 행정적으로 실시한 지방정부가 도로확장이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민들이 도로를 필요로 한다는 지방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도로확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연의 권리의 존중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헌법상 권리의 충돌이나 주민들의 희생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로야 지방정부에 “30일 이내 Vilcabamba 강 주변 지역의 정화/복원 계획과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투기 및 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끼친 피해의 회복 계획 및 환경당국의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등 여러 가지 명령을 발하였다.²⁸⁾

28) 그 밖의 법원의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로야 지방정부는 즉시 환경부에 도로건설을 위한 환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연료저장탱크 및 기계설비 주변의 토양에 유류 누출을 방지할 안전 제방의 건설, 유류 누출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 적절한 도로 표지 체계의 이행, 건설폐기물을 저장할 장소 마련 등과 같은 교정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 메탄가스의 처리설비 설치금지청구 사건

2009년 원고들은 피고 농업회사(PRONACA)가 소유하는 양돈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의 처리설비(biodigestor machines)가 헌법상 건강권과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설비의 설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해당 설비의 설치를 허용하되 설비 운용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위원회의 설치를 명함으로써 적절한 물 이용과 폐기물의 처리, 그리고 시민과 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자연의 권리 조항을 인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자연의 권리 조항을 직권으로 인용해, 위원회 설치 결정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 차원에서뿐 아니라 회사가 이 지역에 입지하기 전의 상태로 자연이 회복될 권리를 포함한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혔다.

(3) 산타 크루즈(Santa Cruz) 사건

2012년 18명의 시민은 법원에 지방정부를 상대로 관광 성수기 동안에는 찰스 다윈의 거리에서 건설 공사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였다. 당시 지방정부는 이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시장은 관광 성수기 전에 신속하게 도로를 정비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자연의 권리를 인용하였다. 도로정비 예정지역은 일부 종의 서식지에 해당하며, 특히 바다 이구아나와 그 밖의 다른 종의 이동 경로를 가로지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자연의 권리 조항을 인용해 특히 이동 시기에 서식지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해 환경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하였다. 재판부는 특히 헌법상 사전주의적 보호조치와 권리 간 위계성을 언급하

-
4. 로야 지방정부는 환경부 내 환경질보호국의 권고를 준수해야 한다.
 5. 환경부 지역청장과 Loja, el Oro, Zamora Chinchipe 등 옴부즈만 사무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판결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6. 피고는 필요한 환경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건설을 시작한 데 대해 지방 신문에 4분 1초의 지면으로 공개 사과하여야 한다.

며, Vilcabamba 강 사건을 선례로 인용해, 법원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보호해야 할 의무보다 자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콘도르-미라도르(Condor-Mirador) 노천 채광 개발사업 사건

2012년 3월 에콰도르 정부는 중국인 소유의 광산회사(Ecuacorriente)와 아마존 지역(Zamora-Chinchipe)에서 개발 예정인 대규모 노천 채광 사업 계약(Condor-Mirador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특히 문제가 되었는데 사업예정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 멸종위기에 처한 토착종(특히 양서류)의 원서식지다. 또한 개발사업은 관개·생활용수로 이용되고, 다양한 동·식물종이 서식하는 두 개의 강 유역에 위치한다.

광산회사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노천 광산이 자연의 권리 침해로 기술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하나 이상 종의 절멸을 초래할 수 있는 생태계의 전면적인 형질변경과 지표수 및 지하수를 중금속과 유독물질로 오염시킴으로써 주변 유역의 생태계에 초래될 수 있는 재앙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1월 원주민과 환경·인권 시민단체, 광산 주변의 공동체는 광산회사와 계약당사자인 자연자원부(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장관 및 허가를 해준 환경부장관 등을 상대로 법원에 보호조치 청구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광산개발사업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과학적 조사결과에 비춰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자연의 권리 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개발사업의 중단과 해당 강 유역에 배수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 평가하는 새로운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구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개발사업은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시민사회의 자연보호 노력은 사적 목적에 해당하지만 광산회사의 개발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며, 여기서 환경 훼손은 자연의 권리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5) 탕가바나(Tangabana) 사건²⁹⁾

이 사건은 에콰도르 농림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기업(ERVIC)이 설립한 200헥타르에 이르는 단작 플랜테이션 개발(재조림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퇴역 장성인 소유주는 문제의 플랜테이션을 자신의 소유지를 넘어 지역의 원주민공동체가 집합체로 소유하고 있는 지역(paramos)으로 까지 확대하였다. 공동체 성원들은 해당 지역은 유역 내 집수지역으로 기능하므로 그러한 확대 개발행위를 우려했다. 소나무 플랜테이션은 물질약적 사업으로 paramos 생태계 내 수문학적 흐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환경부는 paramos 원시지역에서 재조림 사업을 금지한 바 있다.

2014년 12월 자연의 권리 운동가와 공동체의 사제는 법원에 보호조치 청구를 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구인들은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공동체 성원들은 회사의 협박에 따른 두려움으로 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 밖에 자신들이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침해를 증명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진술서 및 소나무가 paramos 생태계에 일으킬 피해를 증명하는 과학적 조사)는 각각 개별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증거로 허용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 항소심도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15년 9월 헌법재판소에 적정절차의 위반을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6) 카야파스(Cayapas) 새우 사건

에콰도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새우생산국으로 사업자들은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지역 내 새우 양식장의 확장은 해당 지역의 전통적 맹그로브 숲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고 있다. 1995년 정부는 일부 남은 맹그로브를 보호하고자 이곳을 카야파스 생태보호지역(Cayapas Ecological Reserve)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보호지역에서 이미 영업 중인 42곳의 회사들의 양식장은 계속 존치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새우양식회사와 맹그로브 숲에 생계를 의존하는 지역공동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29) 대부분 판사들이 자연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지 하는지 또 그 밖의 다른 헌법적 권리들과 어떻게 형량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Tangabana 사건이 들린다.

2008년 정부는 새우양식장을 규제하고 보호지역에서 퇴거조치를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환경부는 카야파스를 비롯해 3곳의 생태보호지역에서 12곳의 새우양식회사에 퇴거조치를 명하였다. 이에 2011년 한 양식업자가 행정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자연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헌법 제66조와 제32조를 인용하며, 환경부의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도 기각되자 환경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은 헌법상 자연의 권리 조항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상고하였다.

헌법소송에서 환경부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자연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본 법원의 결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전체 공동체와 관련되고 또 전국적으로 관련된 현안으로 다루어지는 이 사건에서 자연의 권리와 부엔 비비르(buen vivir) 곧 좋은 삶에 대한 존중의 행사인 행정조치가 허용되는 선례를 확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5년 5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자연의 권리와 부엔 비비르는 헌법의 중핵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다른 권리의 해석·적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연의 권리 조항은 ‘횡단적(transversal)’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 조항은 인간 존재가 모든 것의 중심이자 척도이고 자연은 단순히 자원의 공급자로 여기는 고전적인 인간중심주의와 대비되는, 자연을 우선하는 생명 중심적 시각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이번에는 자연의 권리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다.

3. 평가

(1) 자연의 권리 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에콰도르에서 자연의 권리 조항을 원용한 13개의 소송사건 중 6개는 정부가 제기한 것으로 모두 승소하였다. 정부는 한편으로 국가산업으로 광산개발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허가 광산을 저지하기 위해 자연의 권리 조항을 이용하고

이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행하는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고자 자연의 권리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 환경부는 자연의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경제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4년에는 멸종위기종인 콘도르와 재규어를 살해한 개인을 상대로 두 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환경부는 국가에 중의 절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예방적 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있는 헌법 제73조를 인용하였다. 에콰도르에서 자연의 권리 조항이 현실적 규범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

(2) 에콰도르의 정치·경제적 개발구조와 자연의 권리 조항

이 문제는 에콰도르가 처한 경제·정치·사회적 여건 내지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Condor-Mirador 노천 채광 사건을 보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연의 권리 조항은 보호지역에 미치지거나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과 관련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광산회사의 개발이익은 공익이고, 시민사회의 자연보호 노력은 사익이라는 전제에서 전자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의 논거는 명백히 자연의 권리 조항의 문언과 법 이익에 관한 일반 통념에 반해 그 법적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그럼에도 항소심에서도 1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³⁰⁾

원고들은 자신들이 패소한 까닭은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에 있다고 보고 있다. 2010년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국가사법비서실(National Judicial Secretary)에서 작성된 한 메모가 판사들 사이에 회람된 사실이 폭로되면서 원고들의 주장은

30) 환경부 감사에 따르면 이 개발사업이 보존림(Cordillera del Condor)에 간섭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과 헌법은 단지 보호지역 안의 자연뿐 아니라 모든 자연이 권리를 가짐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판결 이유는 부당하다. 또한 원고들의 환경보호이익은 사익이고 사기업의 개발이익은 공익이라는 논리는 전적으로 잘못된 논리다. 자연의 권리는 사회적 이익으로부터 독립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원칙에 반하는 전적으로 그릇된 논리라는 점에서 두 번째 판결 이유 역시 부당하다. 원고들은 항소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현 정부 아래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헌법재판소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에 사건을 항소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신용력을 갖게 되었다. 이 메모에는 헌법에 규정된 보호조치 청구(소송)를 부당하게 남용해 공공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특정 이익에 우선하는 일반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에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국가의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예방소송을 인용하는 판사는 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라 초래될 피해를 개인적으로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적혀 있었다.³¹⁾

여기서 에콰도르의 정치·경제적 개발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에콰도르는 석유수출기구(OPEC)의 회원국으로 원유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대에 육박하고 있는 석유산업 국가다. 달리 말하면 에콰도르는 사회 발전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석유 등 자연자원의 채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주민과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의지를 표방하며 선출된 꼬레아 정부는 2008년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키며 자연과 인간 삶의 조화를 주장하였지만, 그 한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³²⁾

꼬레아 정부가 처음부터 자원 채굴에 기댄 기존의 개발방식을 답습한 것은 아니었고, 자연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사회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참신한 발전 전략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수니-ITT 구상(Yasuni-ITT initiative)”이다. 코레아 대통령은 2007년 9월 유엔총회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1989년)으로 에콰도르 내 최고 원유매장지인 야수니 국립공원의 이스뎡

³¹⁾ Graig M. Kauffman and Pamela L. Martin, 앞의 글, p.11. (사실 헌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이를 시행하는 법률과 제도에 주의를 집중되었다. 코레아 대통령은 즉시 기존 광산의 운용을 연장하는 한편 신규 채광지를 인가하는 광산법(mining law)을 통과시키고자 대중 캠페인을 개시하였다. 코레아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책임성을 갖는 광산업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채광과 석유 추출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익은 탈화석연료 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빈곤의 감소 그리고 교육과 의료보험 그 밖의 공공재에 접근을 확대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원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은 광산법이 원주민 공동체와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라는 헌법상 권리와 자연의 권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 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2009년 1월 광산법이 통과되자 전국에 걸쳐 수 만 명의 원주민, 공동체 권리주의자 및 환경운동가들은 항의를 하였다. 대통령 선거 당시 강력한 지지세력과 긴장·대립관계는 2009년 9월 정부가 자연의 권리와 원주민 공동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법(Water Law)의 입법을 제안하였을 때 정점에 이르렀다. 정부는 2011년까지 채광에 항의한 약 200명의 원주민 지도자들을 체포해 테러행위로 기소하였다(Id., p.4)

³²⁾ 이태혁, 에콰도르의 ‘이중성(dual identity)’: 중국의 등장과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개발의 정치적 제적 역설(paradox),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권 1호, 2016, 178면.

고(Ishpingo)-탐보코차(Tambococha)-띠뿌띠니(Tiputini) 지역(이른바 Yasuni-ITT)의 석유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보상(2020년까지 유전 개발 시 예상되는 원유 시장가격의 50% 수준인 36억 달러)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Yasuni-ITT 구상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였다.³³⁾ 코레아 정부는 국제사회가 마련된 기금의 일부는 부채상환으로 쓰고, 나머지는 야수니 지역의 보호와 그 밖의 다른 지역에 사회-환경적 투자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약 0.13억 달러만 모금이 되었다. 이에 코레아 대통령은 2013년 8월 15일 공식적으로 Yasuni-ITT 구상을 포기하였다. 그 이후 2016년 1월 에콰도르 정부는 이 지역 일부에 대한 채굴권을 중국 자본의 현지 법인(Andes Petroleum)에 양도하였다.³⁴⁾ 이 지역은 사파라(Sapara)³⁵⁾와 키치와(Kichwa)라는 아마존 원주민들의 거주지와 중첩되는 곳인데 에콰도르 정부는 석유개발지역을 점점 확대하며 원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2008년 헌법은 자연과 원주민의 삶과 문화 보전의 가치를 그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³⁶⁾

이처럼 Condor-Mirador 노천 채광 사건은 “대항규범으로서 자연의 권리가 아직 자연자원개발형 국가발전 의제를 억지, 규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아니함”을 지시한다. 그럼에도 “자연의 권리 소송을 통해 판사를 교육, 훈련하

33) 코레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 수입원의 1/3이, 석유채굴산업인 본국에서, 인류의 안녕과 공정한 문명을 위해 이 수입원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에콰도르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하기를 제안합니다.”(이태혁, 앞의 글, 182-3면)

34) 에콰도르에서 유입되는 전체 해외직접투자(FDI)의 50% 이상이 중국 자본으로, 광물자원과 석유등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지난 2010-2015년 사이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국 가운데 에콰도르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이어 4번째 대상국이다. 중국자본은 2006년 중국 국영 정유회사인 CNPC와 Sinopec이 Andes Petroleum과 PetrOriental이라는 현지화한 법인을 통해 캐나다 정유회사 Encanda의 에콰도르 석유채굴지불권을 구입하면서 에콰도르 아마존은 중국자본에 잠식되면서 Andes Petroleum, PetroOriental이 에콰도르 아마존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채굴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35)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지정된 Sapara는 현재 남아 있는 종족 수가 300여 명에 불과하다.

36) Yasuni-ITT 지역에 대한 석유채굴권의 양허에 대해 야수니 지역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발에 있어 ‘자유로우며, 정보에 기초한 사전 협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ultation: FPIC)’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57조 위반임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정책에 분개해 ‘거리’로 나오고 있다(이태혁, 위의 글, 184-7면)

는 이러한 노력은 점진적으로 자연의 권리 규범이 발전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³⁷⁾ 이 사건에서 정부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자연의 권리 조항의 원용은 위헌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광산에 대한 통제를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른 ‘도구적 관점’에서 이용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자연의 권리 법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³⁸⁾

고든(Gordon)은 자연의 권리 소송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에서 자연의 권리는 심화, 발전되고 있다며, 자연의 권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자연의 권리가 실제 현실에서 점점 더 정상성(normalcy)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³⁹⁾ 결론적으로 고든은 자연의 권리가 지금은 약하지만 자연적 실체(natural entity)를 사람과 같은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자연의 권리는 단순한 립-서비스에서 비중을 갖는 그 무엇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연적 실체의 법적 보호를 지지하는 정치적 의지의 향방이라고 한다.⁴⁰⁾

(3) 에콰도르의 기득이익집단과 자연 그리고 지역공동체

자연의 권리 조항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것은 또한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기득이익집단이다. Cayapas 새우 사건이 이를 잘 예증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우양식산업이 가장 발달해있는 에콰도르에서 양식업자들은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가 1995년 일부 남은 맹그로브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보호지역을 지정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양식장의 존치를 허용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새우양식산업과 맹그로브 숲이라는 보호가치 높은 자연 그리고 맹그로브 숲에 의지해 지급자족의 삶을 유지해온 지역공동체의 이익은 지금까지 침예하게 대립해 왔으나 정부는 거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³⁷⁾ Graig M. Kauffman and Pamela L. Martin, 위의 글, p.12

³⁸⁾ Id.

³⁹⁾ Gwendolyn J. Gordon, Environmental Personhood, 43 Colum. J. Env'tl. L. 49 (2018), at 87.

⁴⁰⁾ Id., at 88.

그러다가 2008년에 이르러서야 코레아 정부가 보호지역에서 양식장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을 정당화하는 주된 헌법적 근거는 말할 것도 없이 자연의 권리 조항이다. 2015년 자연의 권리와 부엔 비비르는 헌법의 중핵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다른 권리의 해석·적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향후 자연의 권리와 재산권(직업의 자유)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 있을 때 원칙적으로 자연의 권리가 우선해야 함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자연의 권리 조항의 실현에서 매우 귀중한 선례로 기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Cayapas 새우 사건은 환경부처의 일상적 업무과정에 자연의 권리의 반영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자연의 권리 법리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기득이익에 맞서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 에콰도르의 법률가 집단과 자연의 권리 조항

자연의 권리 조항의 실현에서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장애는 바로 자연의 권리의 내용과 실현방법 등에 관하여 체계적 지식이 결여된 판사와 변호사 등 법률가 집단이다. 이를 예증하는 사건이 탕가바나 소송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재판부는 자연의 권리는 인간의 이익으로부터 독립해 인정되며 에콰도르 헌법 제71조가 자연의 권리 조항의 위반으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자연의 이익을 위한 소송 제기를 허용하고 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가 손해의 현존성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판시 부분도 사전에 훼손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이 예방청구(소송)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진술서 및 소나무가 paramos 생태계에 일으킬 피해를 입증하는 과학적 조사)는 각각의 개별 증인의 증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한 부분도 형사소송에서나 거치는 엄격한 증거절차를 요구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부당하다.

카우프만과 마틴은 이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까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 변호사와 판사에게 자연의 권리와 그것의 실현방법에 관한 지식이

결여되었다. 자연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일부 사건에서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판사에게 낯선 것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은 법(학) 교육에 반한다. 그 결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판사는 일반적으로 경제개발행위는 자연의 권리에 우선하는 개별적 권리(가령 재산권이나 직업 수행의 자유 따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⁴¹⁾

III. 자연의 권리 모델과 오슬로 선언

자연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에콰도르의 헌법과 이 헌법의 자연의 권리 조항에 기초하게 제기된 소송과 판결은 아무 맥락 없이 일어난 사태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 문명(특히 서구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관에 기반한 문명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고가 기저에 흐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자연의 권리 모델)과 새로운 세계관에 기반하여 환경법을 포함한 법 일반 체계를 새롭게 재구축하자는 입장(환경법에서 생태법으로 전환: 오슬로 선언)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연의 권리 모델

유럽에서 자연의 권리론을 주도하는 전문가이자 대변자로 활동하는 머타 이토(Mumta Ito) 변호사는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현행 환경법은 “우리 경제체계 자체의 근본 지향과 같은 근본 원인은 다루지 않은 채 일상행위의 외부성(externalities)만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결과 환경법은 “단지 훼손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훼손 자체를 멈추거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음을 지적한다. 현행 법체계에 내재한 근본 결함으로 “살아 있는 존재(living beings)를 단순한 객체 내지 재산으로 취급하는 태도, 달리 말하면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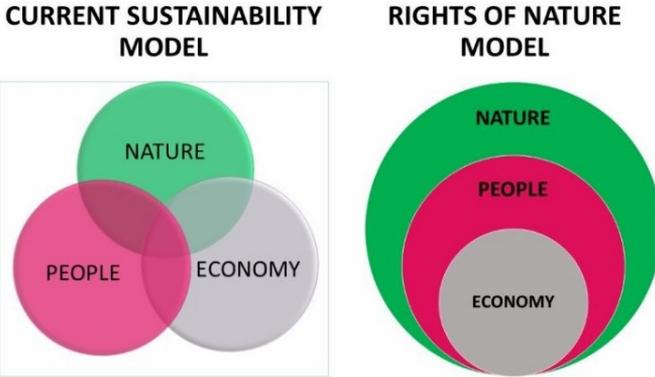
41) Graig M. Kauffman and Pamela L. Martin, 앞의 글, p.11

대한 효용성-곤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를 꼽는다(이것이 자연파괴를 동반하는 무한 성장에 터잡은 경제 패러다임을 가속화한다고 한다).

그녀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과 사람, 경제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모델, 곧 “지속가능성 모델”과 “자연의 권리 모델”을 제시한다. 그런데 지속가능성 모델은 각 원이 다른 것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현실에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므로 결국 자연의 권리 모델이 실재에 부합하는 더 적합한 것이라고 한다(이를 ‘자연 없이는 사람도 없고, 사람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말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토 변호사는 자연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인간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는 전략에 기반한 자연의 권리 모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하며, 이 자연의 권리 모델의 핵심은 자연을 고유한 이익을 가진 이해당사자로 우리 인간의 법체계 내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를 위한 핵심장치가 바로 “자연의 권리”⁴²⁾라고 한다.⁴³⁾

[그림 1] 지속 가능성 모델과 자연의 권리 모델



출처: Mumta Ito, Nature’s rights: a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COLOGIST(2017, May)

42) 그녀는 기본적으로 권리를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도구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전제(專制)에 대한 강력한 균형 조절 장치로 자연의 권리를 제시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우리 경제와 삶의 기본 토대인 자연의 이익을 대변할 권한을 사람과 정부에 부여하고자 한다.

43) 그녀는 이러한 자연의 권리 모델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권리는 자연의 권리이고, 자연의 권리의 하부시스템으로서 인간의 권리, 인간의 하부시스템으로서 재산 내지 기업의 권리라는 권리의 자연적 위계가 성립한다.”는 명제를 도출한다.

지구법센터(the Earth Law Center)⁴⁴⁾의 창립자인 린다 시한(Linda Sheehan)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자연에 권리를 확장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결국 자연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단지 무한한 경제성장을 위한 연료로 가정하는 현행 환경법·정책의 실패에서 연유한다고 하며, 인간이 유한한 행성 지구의 자원을 단지 자원으로 여기는 한, 환경법과 정책은 환경 훼손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언정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⁴⁵⁾ 뉴질랜드 법학자 허치슨(Abigail Hutchison)은 대부분 법체계에서 환경은 법인격의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회사의 법인격은 인정된다는 사실은 현대 (서양) 사회가 자연 세계를 단지 수익을 위한 존재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지적한다.⁴⁶⁾

이러한 인식은 최근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법원 판결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의 아트라토 강 유역(Atrato River Watershed)에 원상회복할 권리를 포함한 특정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이를 예증한다. 법원은 판결에서 “법과 정책들이 경제적 이용과 개발에 강조한 나머지 환경과 사회(공동체)의 권리 보호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⁷⁾

2. 환경법에서 생태법으로 전환 필요성: 오슬로 선언

2016. 6. 일단의 환경법 전문가들은 오늘날 점증하는 생태위기를 맞아 생태학적 진실에 바탕하여 새로운 틀로 환경법을 재조직할 것을 주창하며, 환경법(Environmental Law)에서 생태법(Ecological Law)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선언(“Oslo Manifesto” for Ecological Law and Governance; 오슬로 선언)을 채택하였다.⁴⁸⁾

44) 센터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는 <https://www.earthlawcenter.org/>

45) Interview: Linda Sheehan on the Rights of Waterways, WATER CANADA (June 14, 2013), <http://watercanada.net/2013/interview-linda-sheehan-on-the-rights-of-waterways/>.

46) Abigail Hutchison, The Whanganui River as a Legal Person, 39 ALTERNATIVE L.J. 179, 205-6 (2014).

47) Press Release, Cmty. Envtl. Legal Def. Fund, Colombia Constitutional Court Finds Atrato River Possesses Rights (May 4, 2017), <https://celdf.org/2017/05/press-release-colombia-constitutional-court-finds-atrato-river-possesses-rights/>.

48) 오슬로 선언의 원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elga.world/oslo-manifesto>

이 선언에서는 오늘날의 생태위기에는 경제성장의 동학, 인구 성장, 과소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또한 현행 환경법을 떠받치는 철학이나 존재론 및 방법론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오슬로 선언에 따르면 근대 서양법에 바탕을 둔 환경법은 종교적으로 인간중심주의, 인식론적으로 데카르트의 주체-객체 이분법, 철학적으로는 개인주의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공리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세계관이 환경법을 인식, 해석하는 방법(론)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생태적 상호의존성(ecological interdependencies) 및 인간-자연 간의 상호관계성(human-nature interrelations)을 간과하고, 자연을 “객체화 또는 대상화”하는 데서 가장 두드러진다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법의 결함을 극복하려면 단지 더 많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법이 필요하다고 하며,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 전일론(holism), 세대 내/세대 간 및 종(種)간 정의(intra-/intergenerational and interspecies justice)에 기반을 둔, 법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법은 생태적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한편, 더 이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 그리고 집단 책임성에 대한 개인 권리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생태법은 인간 삶의 자연적 조건을 내재화하고, 이것을 헌법과 인권법, 재산권, 기업의 권리 및 국가주권을 포함하여 모든 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⁹⁾

참고: 자연의 권리 연표(Chronology of RoN)⁵⁰⁾

• 1972

서든 캘리포니아 로스쿨의 학술지에 시대의 획을 긋는 스톤(Christopher Stone) 교수의 논문인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Should trees

49)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의 범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인간 법체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철학이 주장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이다. 이 새로운 법철학은 두 가지 기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인간은 더 큰 존재공동체의 한 부분이고, 그 공동체의 성원의 안녕은 전체로서의 지구의 안녕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고다. 둘째, 우리 인간의 법과 거버넌스는 전체로서의 지구와 지구의 모든 성원의 안녕의 보호를 의도해야 한다는 사고다. 다음 적절한 기회에 지구법학에 관한 논의를 한국사회에 소개하려 한다.

50) <https://rightsofnaturesymposium.com/chronology-of-ron> (방문일자: 2019. 8. 10.)

51) 소송사건은 이렇하다. 1) Chevron-Texaco (Ecuador); 2) BP spill (USA); 3) Yasuni

have standing –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가 게재되었다. 논문에서 스톤 교수는 현행 법구조 아래에서 어떻게 자연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는지를 서술하였다.

• 1989

내쉬(Roderick Nash) 교수는 《자연의 권리(The Rights of Nature: A History of Environmental Ethics)》에서 역사를 통해 권리 없는 존재-노예, 여성 그 밖의 존재-가 법적 권리체계 안에 자신들을 인정받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 2001

토마스 베리는 <권리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역할(The Origin, Differentiation and Role of Rights)>에서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이 어떻게 내재적 권리를 갖는지를 기술하였다.

• 2003

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 컬리닌(Cormac Cullinan)은 《야생의 법(Wild Law: A Manifesto for Earth Justice)》에서 토마스 베리와 함께, 스톤과 내쉬가 촉발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적·역사적 논의에 중요한 영적, 도덕적 요소를 추가하면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 2006

환경단체인 CELDF(The Community Environmental Legal Defense Fund)는 펜실베니아 Schuylkill 카운티의 작은 마을 Tamaqua Borough와 협력해 폐기물 회사가 마을에 유독한 하수 슬러지를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CELDF는 Tamaqua가 슬러지 투기를 자연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연의 권리법률안을 입안하는 데 지원하였다.

• 2008

9월 에콰도르는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는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 2009

4월 22일 제63차 UN 총회에서 4월 22일은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로 선포되었다(A/RES/63/278). 볼리비아

대통령 모랄레스(Evo Morales Ayma)는 총회에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 선언에 관한 성명서를 전달하였다(A/63/PV.80)

• 2010

4월 볼리비아는 기후변화 및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컨퍼런스(the World People'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를 개최하였다. 거기서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other Earth)를 이끌어냈다. 컨퍼런스 이후 볼리비아는 UN 총회에 검토를 위해 동 선언을 제출하였다.

8월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A/65/314) 첫 발간
11월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시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세일가스의 굴착과 수입 파쇄를 금지하는 일환으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자연의 권리를 입법화한 첫 사례다.

볼리비아 입법부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 법(the Law of the Rights of Mother Earth)을 통과시켰다.

12월 제65차 UN 총회에서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두 번째 결의(A/RES/65/164)가 채택되었다. 결의를 통해 사무총장에게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주최할 것과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고, the Harmony with Nature 웹사이트를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 2011

에콰도르에서 헌법 조항에 따른 최초의 자연의 권리 소송에서 생태계의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Loja 지방법원에서 심리된 소송에서 Vilcabamba 강이 원고가 되었다. 강의 자연적 흐름과 건강에 간섭하는 정부의 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은 스스로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음이 선언되었다.

제66차 UN 총회에서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세 번째 결의(A/RES/66/204)가 채택되었다.

8월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A/66/302) 발간
네팔에서 자연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현재 의회

의원들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 2012

볼리비아는 어머니 지구 및 핵심 발전(the Mother Earth and Integral Development for Living Well) 아래 어머니 지구의 권리 법(the Law of the Rights of Mother Earth)을 채택하였다. 볼리비아 다민족입법부(Plurinational Legislative Assembly)에서 통과된 동 법은 법령에서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Whanganui 강에 의존해 살아가는 마오리 부족 등 원주민과 Whanganui 강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다.

4월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총회의 두 번째 상호대화가 열렸다. 이 대화에서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발견이 논의되었다.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유엔 지속 가능 발전 컨퍼런스(Rio+20) 결과물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제39절(Harmony with Nature)에서 자연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8월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세 번째 사무총장 보고서(A/67/317)가 발간되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의사결정에서 자연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12월 제67차 UN 총회에서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네 번째 결의(A/RES/67/214)가 채택되었다.

- 2013

유럽시민의 자연의 권리 이니셔티브(the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for the Rights of Nature)를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유럽 시민들이 정부에 심의를 위한 안건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UN 제68차 총회에서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다섯 번째 결의(A/RES/68/216)가 채택되었다.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네 번째 사무총장 보고서(A/68/325)가 발간되었다

- 2014

자연의 권리 지구 연합(The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은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국제 회합을 지원하고, 에콰도르 수도 키토(Quito)에서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위한 법정⁵¹⁾을 열었다.

뉴질랜드 의회는 투호족(Tuhoe people)과 정부 간의 합의를 최종타결 짓는 우레웨라 법(the Te Urewera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우레웨라-전체 면적이 2,000 평방 킬로미터가 넘는 전(前) 국립공원-는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법적 승인”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제69차 UN 총회에서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여섯 번째 결의(A/RES/69/224)가 채택되었다.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다섯 번째 사무총장 보고서(A/69/322)가 출간되었다.

12월 제20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0)가 개최되는 동안 리마에서 제2회 국제 자연의 권리 법정⁵²⁾이 개시되었다.

- 2015

스웨덴 의회(Sweden's Riksdag)는 자연의 권리를 스웨덴 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안을 준비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치를 검토하였다.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 “우리 공동의 집을 돌봄에 관하여”(the encyclical *Laudato Si*, “On Care For Our Common Home”)를 발표하였다. 회칙에서 교황은 소비주의와 무책임한 개발을 비판하며, 환경훼손과 기후변화를 개탄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통일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호소하는 교황의 회칙은 자연의 권리를 위한 기초이다.

제70차 UN 총회에서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제7차 결의(A/RES/70/208)가 채택되었다.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제6차 사무총장 보고서(A/70/268)가 출간되었다.

파리에서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동안 제3회 국제 자연의 권리 법정⁵³⁾이 개최되었다.

- 2016

2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녹색당은 자연의 권리 정책 플랫폼을 채택하였다. 스코틀랜드 녹색당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콜롬비아의 헌법재판소는 Atrato 강은 “보호, 보전, 유지 및 복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또 원주민과 정부로 구성되는 강을 위한 공동 보호기구(joint guardianship)를 설치하였다.

제71차 UN 총회에서 여덟 번째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결의(A/RES/71/232)가 채택되었다.

지구법학을 다루는 첫 번째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전문가 요약보고서(A/71/266)가 발표되었다.

- 2017

뉴질랜드 의회는 Whanganui 강에 생태계로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the Te Awa Tupua Act)을 제정하였다.

인도 우타르칸트(Uttarakhand) 고등법원은 the Ganga and Yamuna 강과 빙하 및 그 밖의 생태계를 특정한 권리를 갖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시티는 “권리주체인 집합적 실체로서 생태계와 종들로 구성되는 자연의 권리의 광범한 보호”를 인정하고 규율하는 그러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의 입법을 명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콜로라도 라파예트(Lafayette)는 건강한 기후에 대한 인간과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침해인 석탄 연료의 채굴을 금지하는 기후권리장전(the Climate Bill of Rights)을 최초로 시행했다.

4월 21일 제7차 지구법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루는 제7차 Harmony with Nature 인터랙티브 다이얼로그가 게시되었다.

콜로라도 강 소송(Colorado River vs. State of Colorado)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되었다. 미국에서 특정 생태계가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정을 구하는 최초의 소송이다.

제2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3)가 열리는 동안 제4회 국제 자연의 권리 법정⁵⁴이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다.

IV. 나가며

자연은 지금까지 이성적 주체인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되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자원’으로 여겨져 왔다. 환경법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에 바탕해 구축된 법체계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더 많은 환경법이 더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환경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종의 절멸과 자연 서식지 훼손의 속도와 규모가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자연의 권리는 이처럼 자연을 인간·만을 위한 단순한 자원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오늘날 환경질 악화와 환경훼손이라는 자해적인 결과의 근본 원인이라는 반성적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 자연의 권리가 2008년 에콰도르 헌법전에 반영된 것은 이러한 논의가 단순히 지적 차원을 넘어서 한 정치사회공동체의 기본적 규범가치로 공식 승인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태다. 자연의 권리론자들의 앞에 던져진 과제는 이제 자연의 권리가 실제 인간 성원에 의하여 존중될 수 있도록 자연의 권리를 현실화하는 다양한 실천 사례를 만들고, 또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것이다. 코막 켈리넨은 《야생의 법》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강의 흐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법, 지구의 기후를 불안정하게 하는

(Ecuador); 4) Great Coral Reef (Australia); 5) Condor Mirador (Ecuador); 6) Fracking (USA), 7) Persecution of Defenders of Mother Earth (Ecuador) 8) GMOs and 9) Climate Change.

- 52)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다. Yasuni (Ecuador); Chevron-Texaco (Ecuador); BP (Gulf of Mexico); Fracking (USA/Bolivia); Condor Mirador (Ecuador); Conga - Cajamarca Mine (Peru); Climate Change and False Solutions; Great Barrier Reef (Australia); Defenders of the Earth - Bagua (Peru); 4 Basins- Corrientes (Peru); Belo Monte (Brazil); and REDD.
- 53)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다. Climate Change; Financialization of Nature / REDD; GMOs, Defenders of Nature; Mega Hydroelectric Plants (Brazil); oil exploitation in Ecuador (Yasuni and Chevron) and presentation of new cases (Corralejas Colombia; 570 hydro power dams in Eastern Europe; Gold mining in Galicia, Greece & cyanide spill in Romania; Lack of int'l coherence in ocean “management”; Shell in Nigeria + Tar Sands in Canada).
- 54)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다. Climate Change (false energy solutions); financialization of nature; water deprivation in Almería - Spain; Defenders of Mother Earth; Lignite Mining in Germany; threats to the Amazon (Ecuador, Brazil, Bolivia-Tipnis and French Guyana); implications of free-trade agreements to Nature.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우리의 법, 모든 생명의 본원적 가치와 존재할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우리의 법은 사람의 매매를 허용한 법과 같이 언젠가 비난받을 때가 올 것이다”

허치슨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누구를 법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의 가치와 영향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법인격은 우리 사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의하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또 권리·의무를 갖는 적합한 실체인지를 결정하게 한다.⁵⁵⁾ 이제 환경을 인간을 둘러싼 무기-유기체계로 보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명-비생명적 존재들이 어우러진 공동체로서 지구를 사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지구 공동체 맥락에서 우리 인간과 비인간 생명·비생명적 존재, 그 의존적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각과 실천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이미 도래하였다고 본다.

논문투고일 : 2019. 8. 10. 심사일 : 2019. 8. 18. 게재확정일 : 2019. 8. 26.

⁵⁵⁾ Abigail Hutchison, *The Whanganui River As a Legal Person*, 39 *ALTERN. L. J.* 179, (2014), at 180

참고문헌

- 김은중, 발전 담론과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중남미연구 32권2호, 2013.
- 조영현·김달관,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연구 31권2호, 2012.
- 홍성태·최현·박태현, 공동자원론, 생태헌법을 제안한다, 진인진, 2016.
- 코막 켈리닌(박태현 옮김), 야생의 법: 지구법선언, 2016, 로도스
- Abigail Hutchison, The Whanganui River As a Legal Person, 39 ALTERN. L. J. 179, (2014)
- Christopher Stone, Should Trees Have Standing--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45 S. Cal. L. Rev. 450 (1972)
- David R. Boyd, Recognizing the Rights of Nature: Lofty Rhetoric or Legal Revolution?, 32-SPG Nat. Resources & Env't 13 (2018)
- Erin Daly, The Ecuadorian Exemplar: The First Ever Vindications of Constitutional Rights of Nature, 21 Rev. European Community and Int'l Envtl. L. 63-66 (2012)
- Erin L. O'Donnell, At the Intersection of the Sacred and the Legal: Rights for Nature in Uttarakhand, Ind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30, (2018)
- Erin L. O'Donnell and Julia Talbot-Jones, Creating legal rights for rivers: lessons from Australia, New Zealand, and India, Ecology and Society 23(1): 7, 2018.
- Graig M. Kauffman and Pamela L. Martin, Testing Ecuador's Rights of Nature: Why Some Lawsuits Succeed and Others Fai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anal Studies Association(Atlanta, Georgia, 18 March 2016)
- Hope M. Babcock, A Brook with Legal Rights: The Rights of Nature in Court, 43 ECOLOGY L.Q. 1, 3 (2016)
- Judith E. Koons, WHAT IS EARTH JURISPRUDENCE?: KEY PRINCIPLES

- TO TRANSFORM LAW FOR THE HEALTH OF THE PLANET, 18 PENNSE. L. R. 47 (2009)
- Oliver A. Houck, Noah's Second Voyage: The Rights of Nature as Law, 31 Tul. Env'tl. L.J. 1 (2017)
- Gwendolyn J. Gordon, Environmental Personhood, 43 Colum. J. Env'tl. L. 49 (2018)
- Jacinta Ruru, Tuhoe-Crown settlement-Te Urewera Act 2014, Maori Law Review (2017)
- Kyle Pietari, Ecuador's Constitutional Rights of Nature: Implementation, Impacts, and Lessons Learned, WILLAMETTE Env't. L.J. 37 (2016)
- Matthew Miller, Environmental Personhood and Standing For Nature: Examining the Colorado River Case, 17 U. N.H. L. Rev. 355 (2019)
- Mumta Ito, Nature's rights: a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y Mumta Ito, ECOLOGIST(2017, May), theecologist.org/2017/may/09/natures-rights-new-paradigm-environmental-protection. (2019. 8. 20.방문)
- Natalia Greene, The First Successful Case of the Rights of Nature Implementation in Ecuador,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 (Oct. 9, 2016), <http://therightsofnature.org/first-ron-case-ecuador> (2019. 8. 20.방문)
- Robin R. Milam, Rives and Natural Ecosystems as Rights Bearing Subject,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 <https://celdf.org/2017/09/press-release-colorado-river-v-state-colorado-first-nation-federal-lawsuit-river-seeks-recognition-legal-rights-exist-restoration> (2019. 8. 20.방문)

【Abstract】

The Rights of Nature enshrined in the Ecuadorian Constitution, Its Ideals and Realities

Park, Taehyun

(Professor, Law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September 2008, Ecuador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recognize the rights of nature as a constitutional right by pass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containing the provisions of nature's rights by referendum. The article 71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Nature, or Pacha Mama, where life is reproduced and occurs, has the right to integral respect for its existence and for th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of its life cycles, structure, functions and evolutionary processes. All persons, communities, peoples and nations can call upon public authorities to enforce the rights of nature. To enforce and interpret these rights,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shall be observed, as appropriate."

In 2011, the Ecuadorian court favored a plaintiff's claim to restore rivers and its surrounding ecosystems against local government, who did not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efore dumping the waste generated in the road construction process into rivers.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rights of nature are not always interpreted and applied follow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nstitution.

Some of the lawsuits fil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rights of nature have prevailed or the others have not. The results of the litigation seem to be the conclusions of the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natural rights, but such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re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structure of Ecuador, the forces of the interest group,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lawyers' legal literacy on the rights of nature.

Despite these failings, in Ecuador the rights of nature do seem to be deepening and developing. While rights of nature arguments have won in only a few cases, and never against large extractive concerns, these few

cases evince a growing normalcy in actual, practical care for the rights of nature. These rights are weak currently but will likely become stronger, in a way that makes natural entities more legitimately person-like, as they become implicitly normed in law, moving the rights of nature from lip-service to something with heft. What matters here is the tenor of the political will supporting legal protections of these entities.

주 제 어	자연의 권리, 에콰도르 헌법, 부엔 비비르, 오슬로 선언, 지속가능성-자연의 권리 모델
Key Words	Rights of Nature, Ecuadorian Constitution, Buen Vivir, Oslo Manifesto, Sustainability-Rights of Nature Model